

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67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3. 13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: 2026. 3. 13.
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6. 3. 25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행정과장 이기동)

가. 개정이유

- 고성서의 공공주택 건설사업 완료 용지 내 혼재된 2개 행정구역(기월리, 서외리)의 경계 조정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고성서의 공공주택 건설사업 완료 후 법정리 간 경계 조정(안 별표)
 - 고성읍 기월리 82-11번지 등 3필지(14㎡) ⇒ 고성읍 서외리 편입
- 2) 공부 정리된 고성읍 기월리와 영오면 영산리·연당리 정비(안 별표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」
- 2)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3) 합 의
 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- 개선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2889(2026. 1. 15.)호]
- 4) 기 타
 -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6-18호
 - 예고기간: 2026. 1. 12.~2026. 2. 2.(21일간)

- .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가. 주요 검토내용

- 본문 조문 개정 없이 「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」 [별표] 개정을 통해 법정리 명칭과 구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, 고성읍 서외리와 기월리 간 경계 조정은 실제 생활권과 일치하도록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됨.
- 공부 정리가 완료된 고성읍 기월리 및 영오면 영산리·연당리에 대한 명칭 및 관할구역 표기를 정비한 것으로 적정함.

나. 종합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 목적과 필요성이 명확하고, 조례안 내용이 상위법령과의 저촉 없이 [별표] 개정을 통해 법정리 명칭과 구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,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6. 3. 25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